#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제 2 소 회 의

의결(약) 제2015-073호

2015. 4. 22.

사 건 번호 2014가맹4192

사 건 명 춘천닭갈비영농조합법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춘천닭갈비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62번길 13(조양동)

대표이사 이ㅇㅇ

# 주 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춘천닭갈비')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 나. 피심인 일반현황

<班>

###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설 립 일		매 출 액		가맹	점/직영점	보 수	주요 업종
설립일	'큰 김 근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7.3.28.	1,041	1,327	1,779	7/2	9/2	8/0	기타외식

<sup>\*</sup>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다. 시장구조 및 실태

### 1) 국내 가맹사업현황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서비스업·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 丑 2>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개)

구 분1)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맹본부수	1,505	2,042	2,405	2,678	2,973
영업표지수	1,901	2,550	2,947	3,311	3,691
가맹점수	132,443	148,719	170,926	176,788	190,730
직영점수	7,695	9,477	10,155	11,326	12,619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2008년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sup>1)</sup>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해당 연도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말 기준 가맹점 및 직영점 개수이다. 예컨대, 2008년도 가맹점 수(107,354개)는 2008년 말 현재 등록된 1,00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2007년 말 기준 가맹점의 개수이다.

# 업종별 가맹본부·가맹점 수 등의 추이

<표 3>

(단위: 개,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외식업	1,598 (66.4)	1,810 (67.5)	2,089 (70.3)
기맹본부수 가맹본부수	서비스업	489 (20.3)	513 (19.2)	601 (20.2)
/ 185千千	도·소매업	318 (13.2)	355 (13.3)	283 (9.5)
	전체	2,405(100.0)	2,678(100.0)	2,973(100.0)
	외식업	1,962 (66.6)	2,246 (67.8)	2,623 (71.1)
브랜드수	서비스업	593 (20.1)	631 (19.1)	1,810 (67.5) 2,089 (70.3)   513 (19.2) 601 (20.2)   355 (13.3) 283 (9.5)   2,678(100.0) 2,973(100.0)   2,246 (67.8) 2,623 (71.1)   631 (19.1) 743 (20.1)   434 (13.1) 325 (8.8)   3,311(100.0) 3,691(100.0)   2,903 (41.3) 84,046 (44.1)   0,535 (34.2) 65,107 (34.1)   3,350 (24.5) 41,557 (21.8)   788 (100.0) 190,710(100.0)   2,984 (29.4) 3,235 (28.6)   3,251 (28.7) 3,006 (23.8)   4,840 (42.7) 5,654 (44.8)
트 앤 ㅡ ㅜ	도·소매업	392 (13.3)	434 (13.1)	
	전체	2,947 (100.0)	3,311(100.0)	
	외식업	68,068 (39.8)	72,903 (41.3)	84,046 (44.1)
) 가맹점수	서비스업	62,377 (36.5)	60,535 (34.2)	65,107 (34.1)
/ 78 省十	도·소매업	40,481 (23.7)	43,350 (24.5)	41,557 (21.8)
	전체	170,926(100.0)	176,788 (100.0)	190,710(100.0)
	외식업	2,984 (29.4)	2,984 (29.4)	3,235 (28.6)
직영점수 - 직영점수	서비스업	3,036 (29.9)	3,251 (28.7)	3,006 (23.8)
一つる電子	도·소매업	4,135 (40.7)	4) 2,984 (29.4) 3,235 (28.6)   9) 3,251 (28.7) 3,006 (23.8)	5,654 (44.8)
	전체	10,155(100.0)	11,326(100.0)	12,619(100.0)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 2) 가맹사업 운영형태

-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 7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 가맹금의 종류

<표 4>

구분	형 태	예시
유형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가입비,
11 8 1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교육비 등
0 M O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보증금,
유형②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담보제공 등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	인테리어 비용,
유형③	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최초 공급상품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비용 등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로열티,
	지급하는 대가	상표사용료,
유형④	-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광고분담금,
T 3 4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	물품대금의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유통이익 등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0 21 (2)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유형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5>와 같이 편윤수 등 9개 가맹희망자와 '춘천닭갈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班 5>

##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연번	가맹점명	대표명	계약체결일
1	ㅇㅇ점	편ㅇㅇ	2010. 8. 6.
2	ㅇㅇ점	김ㅇㅇ	2012. 5. 1.
3	ㅇㅇㅇ점	황ㅇㅇ	2010. 5.19.
4	ㅇㅇㅇㅇ점	편ㅇㅇ	2012. 7.19.
5	ㅇㅇ점	0)00	2011. 7.22.
6	ㅇㅇㅇㅇㅇ점	안ㅇㅇ	2011. 3. 9.

7	ㅇㅇㅇㅇ점	정ㅇㅇ	2011.10.10.
8	ㅇㅇ점	김ㅇㅇ	2012. 6. 7.
9	ㅇㅇ점	양ㅇㅇ	2010. 1. 5.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 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 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③ 생략

### 다. 위법성 판단

6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sup>2)</sup>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본 건에서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 라. 소결

8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 3. 처분

9 피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 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0 피심인은 2015. 1. 6.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 5. 결론

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sup>2)</sup> 기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기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 2015년 4월 22일

의	장	위	원	신	동	권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이 한 주